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<목 차>

1.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국토교통부	작 성 자	이름	김종욱 (안승현)
	담당부서 (과)	대중교통과		직급	사무관 (주무관)
	국장	박무익		연락처	044-201-3832
	과장	김기대		이 메 일	kjunim0729@korea.kr

종합교통정책관

박무익 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		
	2.규제조문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		
	3.위임법령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'18.12.13~'19.1.21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음주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규정함에 따라 법 개전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		
	7.규제내용	① 신속·정확한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, 기기의 정상작동상태 확인·점검 후 측정하도록 규정 ② 운송사업자가 정기적 측정결과 일괄 출력 등을 통해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음주측정기록 관리대장 비치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.		
	8.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		
	9.규제 목표	정확한 음주측정과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		
규제의 적정성	10.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
	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	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적용제외(7호)		
기타	12.일 물 설 정 여부	해당없음		
	13.원 칙 허 용 · 예 외 금 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	해당없음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2조의4(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) ① 법 제21조제12항에 따른 음주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 및 검사는 기기의 정상작동상태를 확인·점검한 후 이상이 없는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음주 여부 확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기록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. 1. 운송사업자는 음주측정기의 사용 횟수·기간 등을 감안하여 용량초과 등 기타 사유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결과를 일괄 출력하여야 한다. 2. 제1호에 따라 일괄 출력한 자료의 원본은 관리대장 이면에 붙여 보관하고, 자료 제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을 발부하여 자료 관리·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 3. 음주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.

I.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(법률 제75735호 2018.8.14. 공포 2019.2.15. 시행)에 따라 오는 '19.2.15일부터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운행전 음주여부를 절차에 맞게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함(법 제21조 제12항)
- 이에 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음주여부를 확인인하고 기록하는 방법등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마련할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(현행유지안) 음주측정 확인(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없음)
- (규제대안1)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정상작동여부 확인후 음주측정 및 측정결과 일괄출력후 보관 등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	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예정('18.12~19.1)	

3. 규제목표

신속·정확한 음주측정과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운행전 음주측정은 신속·정확성이 필요하므로 호흡측정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, 측정전 정상작동상태 확인이 필수적

- 또한, 음주기록 관리는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적발 시 이를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며, 음주측정기의 사용횟수 및 저장공간을 고려하였을 때 삭제되지 않도록 일괄출력 후 보관할 필요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일몰설정 여부	원칙허용· 예외금지
기술	경쟁	중기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○ 영향평가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해당없음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해당없음

- 국제 기준 정합성

해당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으로 일몰설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

- 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)적용 여부

해당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프랑스 버스운수종사자의 경우 음주운전 측정을 한후 일정 수치 이하결과 도출시에만 시동이 걸리는 시동잠금장치가 설치가 의무화

○ 타법사례

철도종사자 음주 확인 및 검사 등과 관련하여 「철도안전법」 및 「철도종사자 음주·약물복용 확인·검사 지침」에 동일·유사내용 규정

III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운전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 비용이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비용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하며,
- 운행 전 음주운전 확인은 기존에 시행중인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으로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

○ 규제 차등화 방안

- 대형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로 업체규모별로 규제 차등화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운행 전 음주운전 확인은 기존에 의무화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이며,

오히려 음주기록이 의무화 됨으로써 안전운전을 위한 관리감독이 용이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운행 전 음주운전 확인은 기존에 의무화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해야할 사항이며, 시행중인 준수사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운행전 음주운전 여부 확인 및 기록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(개정완료 '18.8.14)당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,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음주여부 확인 방법과 기록하는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

2. 향후 평가계획

- 음주운전 여부 확인 및 기록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빈도 및 음주운전 차단효과등의 지표등을 분석 평가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

3. 종합결론

-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, 운송사업자에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직접규정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
- 음주운전 여부 확인 및 기록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보다 음주운전을 예방하여 버스차량을 안전강화의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해당규제 신설은 타당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				백만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1 :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>

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☐ 직접비용

(정성)세분류	여객운송사업자
활동제목	음주측정기 구입 및 관리
비용항목	설비
일시적/반복적	
분석	
근거설명	

(정성)세분류	여객운송사업자
활동제목	음주측정 기록 관리
비용항목	행정부담
일시적/반복적	
분석	
근거설명	

☐ 직접편익

(정성)세분류	여객운송사업자
활동제목	대형교통사고 예방
편익항목	비용절감
일시적/반복적	
분석	
근거설명	

(정성)세분류	여객운송사업자
활동제목	대중교통 안전성 제고
편익항목	시장 안전성 제고
일시적/반복적	
분석	
근거설명	

(정성)세분류	여객운송사업자
활동제목	버스사업 매출 증가
편익항목	영업이익
일시적/반복적	
분석	
근거설명	

②피규제 일반국민 :

☐ 편익

(정성)세분류	운수종사자
활동제 목	운행전 음주 근절
편익항목	안전사고예방
일시적/반복적	
분석	
근거설명	

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:

☐ 편익

(정성)세분류	버스이용객
활동제 목	안전한 버스 서비스 이용
편익항목	안전사고예방
일시적/반복적	
분석	
근거설명	

붙임	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(음주운전 여부확인 및 기록)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① 규제 영역	운영관리
② 규제 방식	기준규제
③ 예비분석모델	정성모델
	판단근거
	-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[별표4]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이미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준수사항이며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개정('17.12.26)에 따라 현재 운송사업자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기록하여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 성질이 유사
④ 대상 업종	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
⑤ 예비분석내용	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- 전국에 약 4천여개의 버스운송사업자, 약 16만개의 택시운송사업자(개인 택시사업자 포함)가 있으며 운송사업 종류별로 개인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 ② 유사사례 분석 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[별표4]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이미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준수사항이며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기록하여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④ 차등화 대상 결정 - 음주확인은 안전을 위한 기존 준수사항으로 업체 규모별로 차등화 되어 있지 않았으며, 음주운전 기록여부 또한 그 성질 유사한 운송사업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사례와 비교하였을때 신고의 의무가 없으며, 별지서식 작성 내용 및 작성빈도를 고려할 때 그 규제가 더 가볍다고 판단되는 바, 차등화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
⑥ 차등화 적용 여부	안전에 관한 규제로, 유사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차등화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